

# 예산총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535,723,865 | 16,071,716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521,595,057 | 15,647,852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14,128,808  | 423,864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14,128,808  | 423,864  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| 3,473,840   | 104,215   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        | 819,648     | 24,589 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| 27,263      | 818        |
|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| 956,000     | 28,680     |
|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   | 5,411,366   | 162,341    |
|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 | 40,000      | 1,200      |
|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| 2,991,059   | 89,732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| 59,600      | 1,788      |
|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     | 350,032     | 10,501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제3회 추경 "명시이월사업조서"로 같음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금(세)은 예산 성립 전 승인 후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.